1.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고객 준수사항

인증고객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인터넷, 브로슈어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 시, KTL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인증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인증문서 또는 인증문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 KTL의 지시에 따라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5)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이 제품(서비스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8) KTL 및/또는 인증 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인증마크 표시

인증표시의 크기와 표시의 위치는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인증마크 표시 제한

1) 인증서상에 표기된 인증마크는 시스템인증업무가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등록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인증기관 표시사용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인증기업은 홍보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인증기관의 인증기관표시와 병행하여 인증표시를 제작하여 문서, 편지상단 또는 건물, 차량, 깃발 등의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인증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증오인 등을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3) 인증표시는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않아야 합니다. (운반용 포장 및 최종소비자가 접하는 개별포장에는 불가)
   ※ ISO /IEC 17030 참조
4) 인증고객은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에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인증마크 사용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인증마크사용이 가능합니다.
6) 인증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인증표시는 인증마크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글귀(예:ISO 9001 인증기업, ISO 14001인증기업 등)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인증마크의 사용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마크는 단독으로 사용가능하나, JAS-ANZ의 인정마크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